

1. 개정 이유

철도 유희부지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고자 제정된 현행 지침의 유효기간이 만료 예정임으로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 제431호)에 따라 유효기간 연장 등의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

2. 주요내용

유효기한 만료일 도래에 따라 기한을 3년 연장(안 제23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철도 유희부지 활용지침 일부개정훈령안

철도 유희부지 활용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조 중 “훈령은”을 “지침은”으로, “2024년 7월 31일”을 “2027년 7월 31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3조(유효기간) 이 <u>훈령</u> 은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<u>2024년 7월 31일까지</u> 효력을 가진다.	제23조(유효기간) -- <u>지침은</u> ----- ----- ----- ----- <u>2027년 7월 31일</u> ----- -----.